

김제여자고등학교 예·결산소위원회 규정 제정 및 구성(안)

안 건	
번 호	

제안년월일 : 2016. 12. 13.

제 안 자 : 김제여자고등학교장

□ 제안 이유 및 근거

-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-13075(2016.6.17.)호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예·결산에 대한
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에 “예·결산소위원회” 구성 의무화를
16개 시·도교육청에 권고
-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제33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16.05.31.)에서
의결된 「전라북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사항 중에
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예·결산소위원회
의무·구성하도록 조례 개정
- 「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알림」(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-11774, 2016.11.30.)
「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 개정 알림(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-11775, 2016.11.30.)

□ 주요 내용

- 위원회의 기능
 -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(단, 추가경정예산 제외)
 -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에 관한 사항
 -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구성
 - 위원장1인,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
 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함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음

□ 심의 사항

- 예·결산 소위원회 규정(안) 심의
- 소위원회 구성(선출) : 운영위원 정수 5명,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간사 1명

※ 붙임 : 김제여자고등학교 예·결산소위원회 규정(안) 1부. 끝.

계	행정실장	교장	결
김제희	이미숙	홍기숙	재

김제여자고등학교 예·결산소위원회 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김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예·결산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,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·자료수집·조사하여 심사한다.

1.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(단, 추가경정예산 제외)
2.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하며, 간사는 예·결산담당 교직원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③ 학생수 100명 미만일 때에는 예·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담당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